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7호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메세지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7호는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법인의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된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여
개괄적인 지배구조 현황과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20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법인으로 전면 확대됨에 따라,
2019년 최초 의무공시 시행 이후 7년 만에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보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
등 상반기 주요 규제동향을 담았습니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활동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한석 센터장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FY2025 유가증권시장 전체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파악하여
지배구조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제공

개요

분석 대상 유가증권시장 전체 일반상장법인 789개사
(2026년 6월 2일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회사)



분석 기간 2025 회계연도



분석 자료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된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의 준수 현황



'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사항 (15개)

주주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26년 중점점검사항
- ② 전자투표 실시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26년 중점점검사항
-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26년 중점점검사항
-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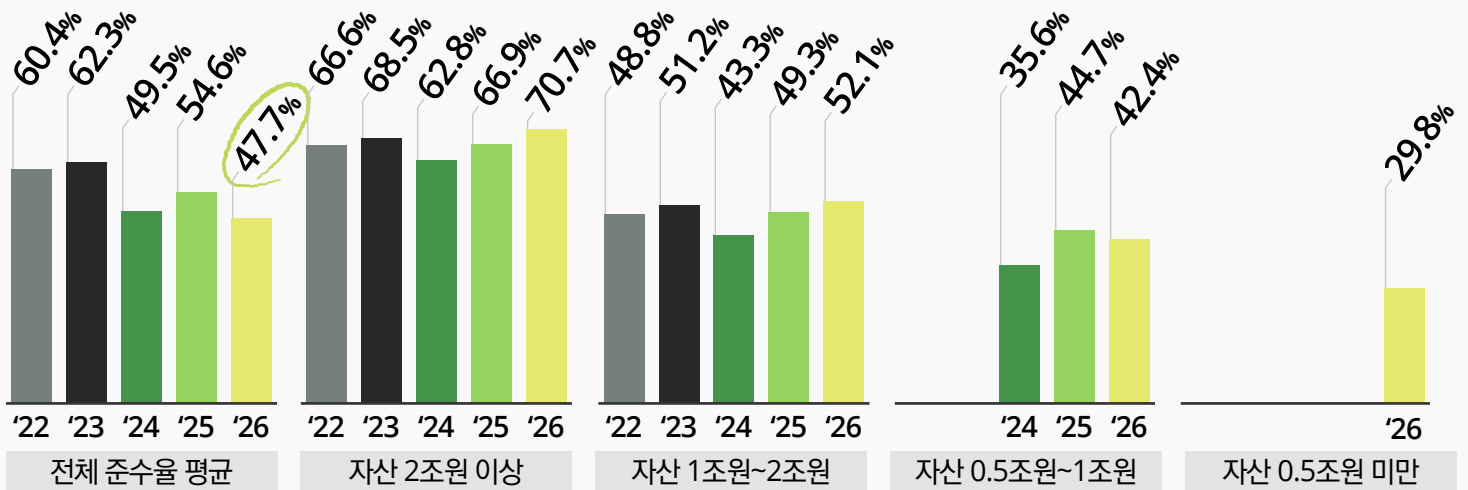
-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⑨ 집중투표제 채택
- ⑩ 기업가치 훼손·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감사기구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26년 중점점검사항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준수 현황 총괄



전체 평균 준수율 | 47.7%



전체 평균 준수율(47.7%)은 전기(54.6%) 대비 6.9%p 하락

- 올해 처음 의무공시 대상에 편입된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287개사)의 미흡한 준수율(29.8%)이 전체 평균에 반영됨



기존 공시대상 구간인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2조원' 및 '자산 0.5조원~1조원' 그룹(502개사)의 핵심지표 준수율은 58.0%로 전기(54.6%) 대비 3.4%p 개선됨에 따라 기존 공시대상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나타남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2조원' 및 '자산 0.5조원~1조원' 그룹은 대부분의 핵심지표에서 전반적인 개선 흐름이 확인됨

- 특히 '④ 현금배당 예측가능성(각각 +11.7%p, +12.8%p, +9.5%p)'과 '③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4~8%p대)'의 개선폭이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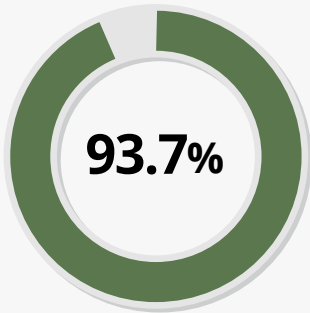


'⑨ 집중투표제 채택(4.4%)',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11.3%)' 등은 여전히 미흡한 준수율을 보임

'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평균 준수를 5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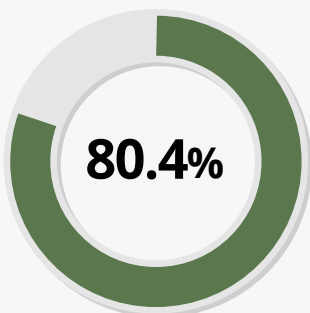
핵심지표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 가능한 절차 마련



- 핵심지표 중 준수율이 가장 높음
- 내부감사기구의 정보접근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기업 내 명문화된 관련 규정·절차가 실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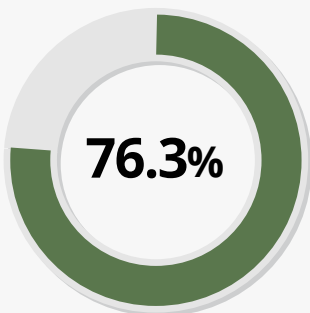
*상법 제412조

핵심지표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 전문가 존재



- 상법(제542의11)상 상장사 감사위원회에는 1명 이상의 회계·재무전문가 보유 명시
-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가 요구되는 개별/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100% 준수함

핵심지표 ② 전자투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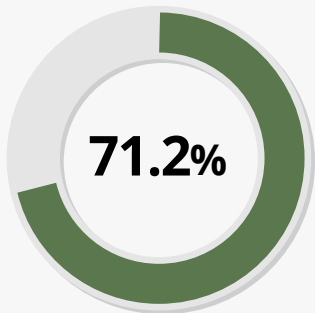
- 의결권 행사 시 접근성·편의성 강화로 주주권익 제고
- 올해 신규 편입된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평균 준수율(64.8%)이 다른 핵심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평균 준수를 50% 이상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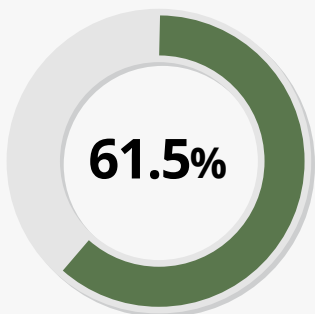
핵심지표 ③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

★ '26년 중점점검사항



- 15개 핵심지표 중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2조원' 및 '자산 0.5조원~1조원' 그룹에서 전기 대비 개선폭이 두 번째로 큼(+4~8%p대 개선)
- 다수의 상장법인은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개최함

핵심지표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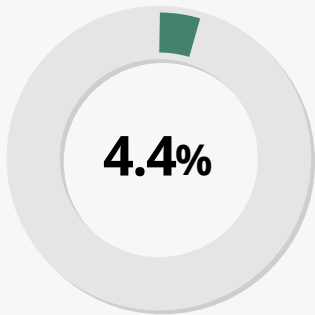
- 내부통제정책에는 위험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법경영, 공시정보관리 등의 정책 포함이 요구됨
- 상장법인의 평균 준수율은 자산규모에 비례한 추이를 보임



'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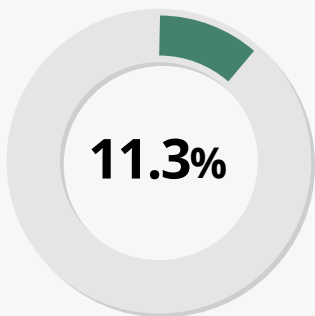
핵심지표 평균 준수를 50% 미만

핵심지표 ⑨ 집중투표제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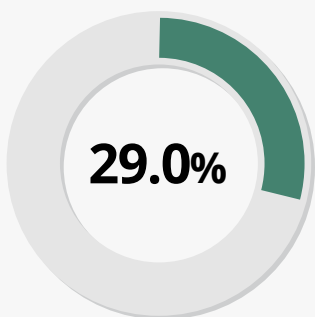
- 핵심지표 중 최저 준수율로 준수 수준이 가장 미흡함
- 개정 상법에서 대규모 상장사는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제한하고 과태료 규정이 정비됨

핵심지표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강화 차원에서 권고되나 준수율은 미흡함
-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경우, 일부는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보완적으로 도입함

핵심지표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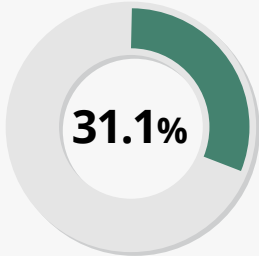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 관한 준수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에도 준수율은 미흡함

'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평균 준수를 50% 미만 (계속)

핵심지표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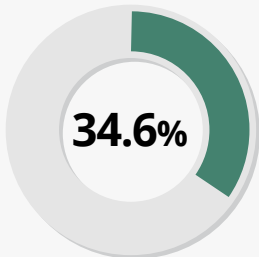
★ '26년 중점점검사항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제외) 상당수 기업이 여전히 법정 의무기간(2주)* 소집 실시를 중심으로 운영 중

*상법 제36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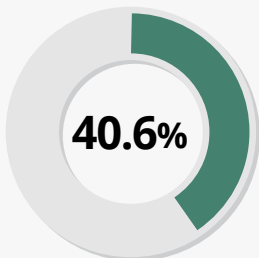
핵심지표 ⑤ 배당 정책·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법인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의 공시 준수에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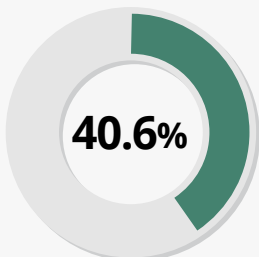
핵심지표 ④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26년 중점점검사항



- 기업은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마련하고 주주에게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권고됨
- (자산 5천억원 미만 상장법인 제외) 비교적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임

핵심지표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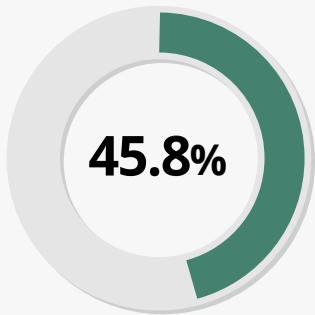


- 내부감사부서원의 지위보장을 위해 인사평가·이동 등에 감사(위원회)의 동의를 득하게 하여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해 권고되나 준수율은 중간 수준

'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핵심지표 평균 준수를 50% 미만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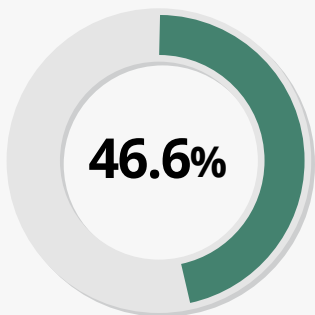
핵심지표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이 아님



- 자본시장법상 의무사항이나 별도 제제 수단이 없어, 연결·개별(별도) 자산 기준 2조원 이상 상장법인 중 일부는 여전히 단일성 이사회로 구성되어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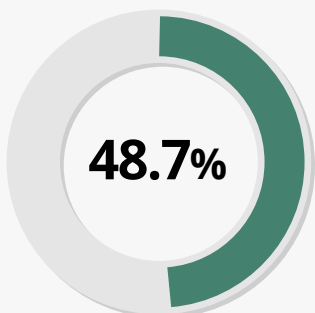
핵심지표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26년 중점점검사항



- 내부감사기구는 공식회의 외에도 외부감사인과 별도로 접촉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 권고됨
- 15개 핵심지표 중 전기 대비 하락폭이 가장 큼 (-17.3%p)

핵심지표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임원 선임 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의 재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권고됨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은 평균 준수율이 개선되고 있음*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1조원~2조원' 및 '자산 0.5조원~1조원' 그룹에서 각각 +3.3%p, +9.7%p, +4.1%p 개선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26년 1분기 정기주총 개최 12월 결산 상장법인 473사 안건 분석

주요 상정 안건 및 특징

 정관 변경	•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으로 정관 변경 안건이 크게 증가 • 집중투표제 효과 축소 등 주주권리 보호 미비 우려가 있는 안건이 전년 대비 증가
 이사 선임	• 이사 선임 안건 중 사내·기타 비상무이사의 반대 권고율이 전년도 7.6%p에서 올해 13.2%p로 크게 증가(5.6%p ↑) • 행정·사법 제재 이력, 낮은 출석률, 회사가치 훼손 우려 등 이사의 감사·감독 책임 이행 미흡이 주요 반대 사유로 지적됨
 이사보수한도	• 이사인 주주가 자신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 확정 • 이에 보수 총액 대신, 이사별로 한도를 구분하여 이사보수한도 승인 건을 상정하는 회사들이 다수 등장
 임원보수규정	• 임원보수규정에 임원보수한도를 금액으로 명시하는 사례 증가 •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한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 유의 필요
 자기주식 보유·처분	• 올해 3월부터 자기주식 보유·처분 시 계획서 작성 및 주주총회 승인이 법적으로 의무화됨 • 처분목적, 지급 조건·대상 등을 중심으로 자기주식 활용 적정성 검토 필요

*대법원 2025.4.24. 선고 2025다210138 판결

2026년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결과, 2026.04.30.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

금융당국, 관계부처와 집권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발표함 (2026년 7월 8일)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 개요	
공시대상 &시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유가증권 상장법인부터 시행 후 점진 확대 2028년 (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107사 2029년 (FY'28) 연결자산총액 5조원 이상 157사
공시 채널 &면책	-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내 공시 (법정공시 즉시 적용) - 사업보고서 공시 시점과 동일한 3월 말 공시 면책 도입 초기 3년간 한시 면책, 예측·추정정보·통제불가한 제3자로부터의 수집 정보에 대한 제도적 면책
제3자 인증	최초 공시기업은 2030년(FY'29) 사업보고서 공시부터 인증 의무 유예기간 공시 시행 후 2년간 유예
SCOPE 3 시행	공시대상별 3년 유예 최초 공시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 후 2031년(FY'30)부터 공시
공시 이행지원 &인센티브	기업의 공시 준비를 위한 전방위 지원 체계 & 공시정보 활용 확대 추진 공시실무 지원 공급망데이터 선정·관리 ESG 종합 컨설팅 공시 인센티브

지속가능성 의무화 & 잠정 의무화 대상 기업은
정보공시 방식의 변화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체계 구축
전략 수립 및 이행방안을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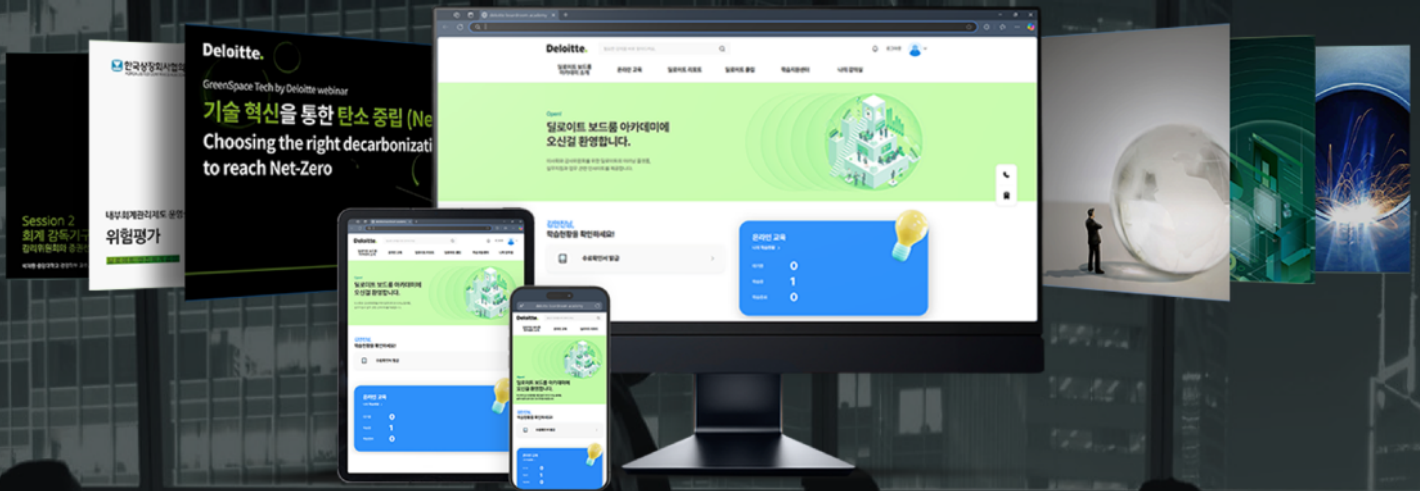
☐ 금융감독원, 「지속가능성 공시, '28년(FY'27)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합니다.」, 2026.07.08.

이사화·감사위원회 온라인 교육 플랫폼,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 이용 대상 전면 확대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딜로이트 클립



사외이사님, 감사위원님, 감사님을 비롯해
기업 거버넌스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딜로이트와 외부 전문가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담은
‘딜로이트 보드룸 아카데미’의 문을 넓혔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사화·감사위원회 핵심 이슈 중심 맞춤형 아젠다 제공
(기업 지배구조, 재무보고, 자금사고 방지, AI 등)



온라인 강의, 딜로이트 리포트, 클립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PC와 모바일을 통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학습



공시용 수료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전문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hansukim@deloitte.com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현 파트너

회계감사

@ hyunjeong@deloitte.com



박종성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학범 파트너

통합 재무 서비스 그룹

@ hbkim@deloitte.com



임정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정훈 파트너

회계감사

@ junoh@deloitte.com



유민지 파트너

회계감사

@ minjyoo@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krccg@deloitte.com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카카오톡에서 ‘**딜로이트 인사이트**’를 검색해보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파트너
hansukim@deloitte.com

강환우 상무보
hwankang@deloitte.com

이주연 차장
juyeonlee@deloitte.com

배예슬 과장
yabae@deloitte.com

권예은 대리
yeekwon@deloitte.com

Contact us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